

2015. 11.

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
전시유물 복제 과업지시서

강북구청
(문화체육과)

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전시유물 복제 과업지시서

I. 과업개요

1. 과업명 :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전시유물 복제 용역
2. 과업목적 : 기념관에 전시되는 자료의 원본 대응으로 사용
3. 과업 범위
 - 가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90일
 - 나. 과업내용 : 총 26건, 26점 유물 복제
 - 원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재료, 형태로 현상 복제

4. 수급자 조건

- 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
- 나.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민간/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근대문화재 복제 납품실적(실적 증명서 첨부)이 있는 업체이며, 구성 인력중 직물전공(석사이상)소지자 또는 보존처리기능자를 보유한 업체
- 다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「중·소기업·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」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(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)를 소지한 업체

II. 과업지침

1. 기본지침

- 가. 계획·설계의 변화, 최신기술의 적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강북구청과 협의하여 추가·삭제·수정·보완해야 한다.

- 나.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은 계획·설계에 우선하여 제작·설치에 반영하여야 한다. 계획·설계와 상충되는 사항은 강북구청의 해석에 따른다.
- 다. 제작은 강북구청이 승인한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, 강북구청과 협의 후 시행한다.
- 라.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강북구청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2. 준수사항

가. 과업수행조건, 관계법규 준수 등

- 복제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강북구청이 갖는다.
- 본 과업지시서는 각 기관의 유물 복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,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본 지시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.

나. 과업진행 보고 등

-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강북구청과 사업추진 일정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일정에 차질 없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과업수행 중 강북구청은 과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과업수행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강북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

다. 의견수렴

- 과업수행 중에 관련 전문가 및 강북구청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며,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강북구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.

라. 관련자료

-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강북구청과 협의하고, 자료의 타당성,

실효성,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활용되어야 한다.

- 자료수집 시 강북구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의 협조 요청을 한 후 수집한다.

마. 보안유지
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. 특히 과업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.
-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거나 강북구청에 피해를 줄 경우 과업수행자는 민·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.

바. 과업내용,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

- 과업수행 중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업무로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업무가 발생할 경우
- 과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강북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,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, 기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결과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한다.

사. 수급자 책임

-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지적재산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민·형사상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에 있어 타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에는 수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.
- 본 과업으로 인한 모든 결과물은 강북구청에 귀속되며,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지적재산권에 침해가 있을 경우 수급자는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
- 본 과업수행과정에 참여기술자의 부적정 등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자가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강북구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즉시 이행(교체)하고 강북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들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, 수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, 본 과업이 준공된 후라도 강북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자 비용부담으로 시정·조치하여야 한다.
- 모든 과업은 반드시 해당분야 전문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며, 성과품 납품 시 서명·날인이 되어야 한다.
- 강북구청과 수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,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반 불이익(계약해지 등)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
 -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강북구청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사항을 위반했을 경우
 -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
 -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
 -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강북구청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
- 복제 과정에서 사용재료 및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의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한다.
- 복제에 사용되는 재료 등은 수급자가 준비하고, 원본과의 유사성 등은 강북구청과 사전 점검을 통하여 최종 복제품을 선정한다.
- 수급자는 작업 개시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 강북구청에 제출하고, 복제 후 “2년” 안에 물리·화학적인 변질이 보일 때는 즉각 수급자의 책임으로 보관을 시행한다.
-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, 강북구청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.

아. 사후관리

- 과업 완료 후 발견되는 하자 및 문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, 해결하여야 한다.

자. 착수계 제출

- 과업수행자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강북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※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계획, 총괄공정표 제출
(대표, 책임자, 제작자 등 구분 명시)

차. 각종 보고사항

-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보고사항은 강북구청의 담당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미하고 일시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구두 또는 유선 지시사항도 이행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착수 후 강북구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.

카. 과업완료

-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14일전에 납품서 1부를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, 여기에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보완하여야 한다.
- 과업완료는 다음의 최종보고서(성과품 및 자료)가 강북구청에 제출된 후 확인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.
 - 납품 완료된 복제 및 재현복원 유물
 - 관련된 자료 일체(작업과정 보고서 3부 등 관련 자료)

Ⅲ. 과업 세부 내용

1. 공통사항

- 가. 모든 규격, 사양, 품질, 성능, 효율 등은 관련 법 규정과 계획·설계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제작·설치한다. 다만,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른다.
- 나. 제작·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신사양으로 대체한다.
- 다. 모든 전시 관련 자료의 확보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,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 되었을 경우 강북구청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라.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강북구청의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.

2. 세부 내용

가. 실측작업

- 문헌조사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해 정확한 자료를 수집한다.
- 실측작업에 소요되는 작업도구들을 준비한다.(촬영소요물품 일체 ,2천만화소 이상급 카메라 ,두께 계측기, 3D스캐너,자 등)
- 몰드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몰도(형틀)용 주석박지, 실리콘, 미세 점토 등을 준비한다.
- 대상 실물과 문헌을 기초로 제작도를 작성하며, 이미 실측도가 있는 경우에는 강북구청의 확인을 거친 후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.
- 각종 정밀 계측기(버니어캘리퍼스, 마이크로미터, 바디줄자, 원형게이지, 컴퍼스 등)를 이용하여 제원을 실측하여 실측도를 제작한다.
- 대상 유물의 보존상태 및 산화된 표면의 질감 등 세세한 특징을 관찰, 분석하여 기록한다.
- 실측 작업 시 유물에 물리적 손상과 화학적 변성이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.

나. 고품질 · 금속류 및 기타유물 복제

- 실측작업표준으로 실측된 자료 및 정리된 자료 등을 중심으로 제작지침을 수립하고, 수립된 지침을 바탕으로 제작설계 한다.
- 모든 유물은 실리콘형틀, 석고형틀, FRP 형틀, 실측작업을 거쳐 성형한다.
- 연마지를 사용하여 성형물을 연마한다.
- 원 재질에 연질, 경질, 철기, 동 등의 성격에 따른 색조를 재현한다.
- 색조 재현된 유물은 성격에 따라 연마, 최종 색조질감, 고풍처리를 한다.
- 실측도, 제작도면, 연출안과 비교 ·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수정 · 보완한다.

다. 문서류 복제

- 실측된 자료 및 실측도와 정리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제작지침을 수립하고, 수립된 지침을 바탕으로 제작설계를 한다.
- 유물선정 및 소장처 실측 허가를 관련기관(담당자)에게 받는다
- 제작 지류, 촬영 및 기타(인쇄, 표면처리등) 특이사항 등을 비롯해 디지털 이미지 처리 방식 전반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기록한다
- 원고 형태수정은 디지털 작업등을 통해 자문등을 통해 지정하는 얼룩을 제거하되 최대한 문서의 기록이나 그림들이 손상가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

- 원본의 조사 후 동일한 느낌의 지류와 섬유를 선정하되 두께 및 질감 등을 우선시 하고 보존성을 고려하여 중성화 처리가 된 용지 및 섬유를 사용하여 인쇄를 한다.
- 인쇄본 혼증 작업을 한다.
- 원본과 같은 색과 형태, 질감으로 고품처리를 하며, 태극기의 경우 뒷면도 비치거나 베어나온 부분을 원본 그대로 제작을 한다. (서명포는 뒷면이 배접 처리 되어있으므로 배접 처리한다.)
- 이밖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복제사례 및 강북구청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.

라. 보채

- 필요시 보채를 통해 최대한 유물 원래의 느낌을 낼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한다.
- 수급자는 진행 전 세부작업 방침을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 논의 후 진행한다.

마. 복제품 포장

- 포장 재료는 문화재 운송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충격 완충제를 적입하여 특수상자로 제작하여야 한다.
- 유물의 무게와 부피를 고려하여 외피상자에 적절히 배분하여 각 외피상자의 무게와 편차가 크지 않도록 포장한다.
- 포장된 유물을 상자에 넣을 때에는 유물과 상자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쿠션물질(솜포 등)을 충분히 넣어야 한다.
- 유물은 중성지, 천 등 부드럽고 해가 되지 않는 물질로 감싸 표면이 긁히지 않도록 한 후 포장하여야 한다.

3. 자문 및 고증

가. 본 유물 복제 제작을 진행함에 있어서 강북구청이 필요로 한다고 판단될 경우, 강북구청이 선정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득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작을 시행한다.

나.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그에 따른다.

4. 복제품 납품 및 결과 보고서 제출

- 가. 최종 성과물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과업수행자가 해외이송을 위한 포장작업 후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.
- 나. 최종결과 보고서는 제작 전 과정이 기록된 최종 보고서를 제본된 형태로 제작하여 제출하며, 사진·디지털 자료 등의 관련 기록 또한 제출하도록 한다.

5. 사업수행조건 및 기타사항

- 가.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나.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 이더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강북구청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보완·수정하여야 한다.
- 다.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·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.